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06
----------	-------

발의연월일 : 2026. 6. 22.

발 의 자 : 조인철 · 주철현 · 박균택
서천호 · 정일영 · 이개호
허영 · 정진욱 · 김현
정준호 · 어기구 · 박용갑
이해민 · 양부남 · 안도걸
이정헌 · 오세희 · 최혁진
허성무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고령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참여 보장과 접근·이용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정보 노출, 과도한 의존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피해 예방·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및 제6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311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겪는 장애인·고령자”를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
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장애인·고령자”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보호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p>8. (생략) ③ ~ ⑦ (생략)</p>	<p><u>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 의 피해 예방·보호에 관한 사항</u> 8.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p>
-------------------------------	--